

의안번호	제 281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 출 연 월 일	2008년 10월 6일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
281

제출연월일 : 2008년 10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며
-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재산의 취득

《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》

- 위치 : 도내 일원
- 매입규모 : 50,000m²
- 사업기간 : 2009. 1 ~ 2009. 12
- 사업비 : 2,100백만원
- 투자계획 : 2009년도 - 2,100백만원

《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》

- 위치 :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D-3블럭
- 사업규모
 - 부지매입 : 2,774m² 970백만원
 - 건물신축 : 지하1·지상2층 826m² 95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09. 1 ~ 2009. 12
- 사업비 : 1,920백만원
- 투자계획 : 2009년도 - 1,920백만원

3.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²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주정가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2 건	52,774.0	3,070,000				
	건물	1 건	826.0	950,000				
	기타							
1	토지	도내 지역 (세부내역 미정)	50,000.0	2,100,000	2009	재산 대체취득	미 정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제천 명지 강변지구 국민 임대주택 단지내 D-3블럭	2,774.0	970,000	2009	화산1191전센터 신축이전	대한주택공사 (사유지)	
	건물	"	826.0	950,000	"	"	신 축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5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 계 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인 재산</p>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